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9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4. 접수 제221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1.경 D와 사이에 개인신용대출 인터넷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5,000,000원을 적용금리 15.9%, 상환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D는 2019. 12. 16.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분할상환금을 마지막으로 입금한 이후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4. 23. 기준 남은 대출원금은 22,711,276원, 이자 및 연체이자 1,333,534원이다.

다. 부부였던 D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는 2019. 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바, 당시 D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D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호협336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9. 12.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합계 24,044,810원(= 22,711,276원 + 1,333,534원) 및 그 중 원금 22,711,2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삼촌으로부터 받은 68,000,000원과 대출받은 114,500,000원을 합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1/2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12. 3. D와 이혼을 하면서 위 지분을 이전받되 피고는 D에게 혼수 비용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D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9. 12. 3.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D는 다음 날인 2019.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 피고는 2019. 10. 31.경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의미가 가미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실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와 D 사이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D가 2017. 5.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2,500,000원에 취득할 당시 피고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37,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D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10,000,000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재산분할 협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광주시 광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구조

면 적 : 16층 호 59.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시 광산구

대6398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3987분의 42.3354

-끝-